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해외여행 사고 시, 보험회사 도우미서비스 활용을

□ 금감원은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발생한 신체상해, 질병, 휴대폰 손해 등 개인의 각종 보험사고로 인한 대처요령을 소개함.

- 2008년 출국자 수는 11,996천명으로 해외여행보험 계약은 1,154,486건에 달하며, 사고발생 건수는 60,075건(상해/질병 의료비 47,326건, 휴대폰손해/배상책임 등 12,431건, 상해/질병 사망 318건)임.
- 최근 4년간 출국자 수의 연평균증가율(CAGR)은 6.0%로 연간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, 이에 따른 해외여행보험 사고발생 건수도 매년 약 30.2%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□ 해외여행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상품으로는 해외여행보험, 상해/질병보험, 배상책임보험, 자동차보험 등이 있으며, 발생의료비가 전액 지급되거나 의료실비를 부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분담하게 됨.

- 이에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 발급처를 통해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, 보험금은 반드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, 각 담보별 자기부담금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□ 해외여행 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 발생 시 각 보험회사에서 제휴하고 있는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.

-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현지 의료상담 및 병원알선 등의 의료지원, 보험금 청구안내, 여행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, 일부 회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도 가능함.
- 이에 보험사고 발생 시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료상담, 여권분실 등 긴급상황 발생 시, 전염병 등 현지 여행정보 등과 관련해서도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(해외 보험사고 발생시 대처요령,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 4팀, 7/10)